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분	대상구분		증빙서류	
면제	1. 군복무 중인 자 (군 의무복무 중인 자)		입영날짜가 기재된 병적 증명서 ※ 군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6개월 이상 복무한 해만 면제 가능	
	2. 치위생전공 관련 대학원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학사편입 재학생 포함) (유사전공 신청불가)		해당년도 1학기 이상 수료함이 확인되는 서류 (ex: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3. 신규면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 국가시험 합격확인서 (합격확인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4-1 2019년 출산자	2019년 출산일이 확인이 되는 서류 제출. 단, 여성만 가능 (ex: 출산증명서)	
	4-2 그 외	협회로 문의		
유예	1.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전속, 비전속 근무자 모두 포함)		1-1 미취업/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서류 상 지역 혹은 피부양자 가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유예(비대상) 사유 해소 시 유예 하였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2 면허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타 업무 종사자)		재직증명서와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는 동 공지사항에 첨부된 양식 참조)	
	1-3 대학교 치위생(학)과 소속(전임, 초빙)교수, 조교 (단, 외래교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재직증명서 ※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를 겸임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1-4 해외근무 및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1 의료기관 휴직자 휴직확인서 (개인정보, 병원정보, 휴직기간명시, 소속기관장의 직인 포함된 서류)	
	2-2 그 외		협회로 문의	

비 대 상 (2 0 1 7 - 1 8 만 해 당)	1. 면허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치과위생사 업무에 미종사 후 해당년도 내 업무 미복귀자 (전속, 비전속 근무자 모두 포함)	1-1 미취업/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서류 상 지역 혹은 피부양자 가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1-2 의료기관 휴직자	휴직확인서 (개인정보, 병원정보, 휴직기간명시, 소속기관장의 직인 포함된 서류)	
		1-3 면허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타 업무 종사자)	재직증명서와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는 동 공지사항에 첨부된 양식 참조)	
		1-4 대학교 치위생(학)과 소속(전임, 초빙)교수, 교교 (단, 외래교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 추가로 제출)	재직증명서 ※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를 겸임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1-5 해외근무 및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